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42
----------	------

제출년월일 : 2009. 6. 10.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의 차이를 없애고, 경비징수 금액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령 해석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로 변경함.
- 나. 상위 법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1조).
- 다.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는 금액은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함(안 제3조 제2호).

개정조례안 : 별첨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3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09. 5. 8. ~ 2009. 5. 2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안산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범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로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한다.

제2조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제4조 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소관 실·과·소		생명산업과
입 안 자	담 당 관 성 명	생명산업과장 김 응 로
	담 성 당 명	농정담당 김 재 봉
	담 당 자 성 명·전 화	이 근 복 (481-2316)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산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안산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농어촌정비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u>농어촌정비법</u> 」 제22조 및 <u>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u>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u>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u>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u>
	제3조(경비징수범위) <u>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u> 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 금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설부지인 토지를 이용 또는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의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생산물에 대하여는 생산, 포획, 채취등의 방법으로 수익한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경비징수 범위) <u>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u> 1.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p>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p> <p>5. <신설></p>	<p>가. 용수로·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p> <p>나. 그 밖에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톤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용수관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소요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p>
<p>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p>	<p>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p>